



제 438회 국회 (임시회)
제 1 차 정 무 위 원 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 자격 확대 등〉

■ 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255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류 승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대한민국전물군경미망인회 회원 자격 확대	5
2. 회원 자격 명칭 변경(“유족인 처” → “미망인”)	10

I. 제안경위

1. 제안자 : 김용만의원 등 10인
2. 제안일 : 2026. 3. 5.
3. 회부일 : 2026. 3.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또는 전상군경 및 공상공경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처(배우자)에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서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전·공상공경 유족인 처(배우자)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는 미망인으로 회원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보상금 수령여부에 따라 회원 가입이 제한되고 있는 전·공상공경 유족인 처의 경우에도 보상금을 받지 않는 사람까지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하고,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단체 명칭에 “미망인” 용어가 들어가 있음에도 회원 자격에 대하여는 유족인 처(妻)”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 이를 대한민국

전물군경미망인회의 명칭 및 정체성에 부합하도록 “미망인”으로 바꾸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

또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단서에서는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선순위자”에게 대한민국전물군경유족회 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바, 미망인도 이에 해당되어 유족회 회원과 중복될 소지가 있으므로 미망인은 유족회 회원에서 제외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안 제3조제2호 단서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①현재 전상군경 등의 유족인 처(妻)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만 회원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전물군경미망인회의 회원 자격을 보상금 수령 여부와 무관히 “유족인 처”는 모두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단체의 회원 자격을 확대하고,¹⁾

②대한민국전물군경미망인회의 회원을 “유족인 처(妻)”로 규정하고 있는 법문언을 단체의 명칭에 부합하도록 “미망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호 및 제3호).

현행	개정안
제3조(회원) 다음 각 호의 단체(이하 “국가유공자등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3조(회원)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대한민국전물군경유족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2. ----- ----- ----- -----

1) 대한민국전물군경미망인회의 회원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대한민국전물군경미망인회 회원 범위와 대한민국전물군경유족회 회원 범위가 중복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대한민국전물군경유족회의 회원 범위 조정을 위한 개정 내용을 포함함.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선순위자로 하되,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한다.

3. 대한민국전물군경미망인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처(妻)

4. ~ 9. (생략)

선순위자(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3. _____

_____미망인

4. ~ 9. (현행과 같음)

1. 대한민국전물군경미망인회 회원 자격 확대

-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에 따른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는 유족(보상금을 받는 처와 미성년자는 제외함)을,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자(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나이 순)를 대한민국전물군경유족회 회원으로 하고,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처(妻)만 대한민국전물군경미망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
- 이에 따르면,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의 유족인 처(妻)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은 대한민국전물군경미망인회의 회원이 되고,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상이등급을 7급으로 판정받은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의 처)은 대한민국전물군경유족회의 회원이 됨.
- 배우자는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순위 중 최우선자이므로, 유공자 본인이 사망하고 처(妻)가 생존해 있는 경우 다른 유족의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처(妻)가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받게 되지만,³⁾

2) 현행법은 전물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을 대한민국전물군경유족회의 회원으로, 그 중 보상금을 받는 배우자를 대한민국전물군경미망인회의 회원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지만, 전물군경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의 경우 유공자 본인 사망 시 유족 중 최우선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유족인 처’ 유형이 발생할 수 없음. 따라서 전물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중 배우자는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유족인 처’가 회원이 될 수 있는 보훈단체를 변경(대한민국전물군경유족회 → 대한민국전물군경미망인회)하려는 개정안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논의함.

3) 국가유공자법 13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중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그 유족이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⁴⁾ 처(妻)가 생존해 있더라도 보상금을 받지 않는 유족 중 선순위자가 됨.

[표 1] 전상군경·공상군경의 상이등급에 따른 처(妻) 소속 보훈단체

본인		→ 사망	배우자		
유형	상이등급		보상금 대상 여부	보훈단체 회원 적용 법조	소속 보훈단체
전상군경	1급~6급	→	○	제3조제3호	대한민국전몰군경 미망인회
공상군경	7급	→	X	제3조제2호 단서	대한민국전몰군경 유족회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 4) **국가유공자법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12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 상이등급 6급

□ 개정안은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 자격에서 보상금 수령 여부를 삭제함으로써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된 전상군경·공상군경의 처가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2025년 말 기준 보상금을 받고 있지 않은 전상군경·공상군경의 유족인 처(妻)는 11,211명으로, 개정안에 따를 경우 해당 유족들은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회원에서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으로 변경되게 됨.

[표 2] 보상금 수령 여부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유족인 처(妻)

(2025. 12. 31. 기준, 단위 : 명)

구 분	보상금 수령	보상금 미수령
전상군경 유족인 처(妻)	42,094	9,261
공상군경 유족인 처(妻)	9,275	1,950
합 계	59,271	11,211

자료: 국가보훈부

□ 보훈단체는 유족의 상부상조와 자활능력 배양을 위하여 설립된 공법 단체로서, 유족은 보훈단체를 통하여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고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보훈단체의 회원은 유사한 환경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 동질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

□ 또한, 보훈단체는 유공자의 유지를 계승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선양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보훈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등의 의사 결정 과정에 같은 유형의 국가유공자 유족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보훈단체의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 이에 비추어 볼 때, 전상군경·공상군경의 처는 같은 유형의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 그 경험과 환경의 유사성 등 동질성이 높을 것이라는 점에서, 보상금 수령 여부와 무관히 동일한 보훈단체에 소속되어 회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것이 현행 체계보다 타당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의 시행일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시행일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그 시행을 위하여 후속 행정조치(정관변경을 위한 총회 → 정관변경 인가 → 정관변경 등기)⁵⁾가 필요하므로 공포 후 시행에 일정한 유예기간을 둘 필요성이 인정되나, 그 절차를 수행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개정법률의 조기 시행을 위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⁶⁾

5)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법인격) ②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정관) ①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회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

② 각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52조(변경등기) 제49조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6) 보훈단체(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등)는 개정안의 조기 시행을 희망하고 있어,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개정안의 시행일을 변경하는 것은 법률관계 당사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 범위를 유족 중 1인까지로 확대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361호)도 법률 시행을 위하여 개정안과 같은 행정절차를 필요로 하나, 그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한 바 있음.⁷⁾
- 국가보훈부는 ‘유족인 처’를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적인 회원 관리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 관련 보훈단체인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및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도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⁸⁾

7) 부칙 <법률 제21361호, 2026. 2. 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8)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는 배우자 중 미망인을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회원에서 제외하고,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으로 하는 것이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설립목적과 합치된다고 보이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2. 회원 자격 용어 변경 (“유족인 처(妻)” → “미망인”)

□ 현행법은 대한민국전물군경미망인회 회원의 자격을 “유족인 처(妻)”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해당 법문언을 “미망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단체의 회원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용어를 단체의 명칭과 정체성에 부합하게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를 일응 수긍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법률용어는 특정 집단이나 계층, 대상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나 고정관념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용어를 순화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각 부처 등의 순화 용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⁹⁾ 해당 용어의 의미와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망인”이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여 법문언에는 이를 순화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성평등가족부는 ‘미망인’이라는 용어는 성차별적 표현이라는 의견임.

[표 3] 「표준국어대사전」상 “미망인” 뜻풀이

미망-인 (未亡人) 「명사」 남편을 여윈 여자. 《춘추좌씨전》의 <장공편(莊公篇)>에 나오는 말이다.

※ 아직 따라 죽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다른 사람이 당사자를 미망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례가 된다.

자료: 국립국어원

9)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열번제판), 법제처, 2021., p.11. • 61.

[표 4] “미망인” 용어 사용 관련 관계기관 의견

기관명	의견
법무부	해당 단체의 명칭 외에 “미망인”의 용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미망인의 부정적 의미를 고려할 때 순화어 사용이 적절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현재 사전적 정의를 고려할 때, 법률 표현으로는 해당 법률에서 지칭하는 대상을 명시적이고 중립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유족인 처(妻)”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
성평등가족부	여성을 부수적 존재로 여기는 성차별적 표현으로, ‘사별한 배우자’ 또는 의미 전달이 가능한 경우 ‘배우자’로 표기. * 단 고유단체명에 포함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 국가보훈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 자격 관련 용어로 ‘미망인’ 사용례가 전무하고,¹⁰⁾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차별과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미망인’의 사용에 대하여 가려 쓰기를 권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는 2017년 표준국어대사전 뜻풀이가 변경¹¹⁾되어, “미망인”은 더이상 성차별적 표현이 아니므로 회원의 자격을 “미망인”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12

10)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는 단체의 설립 당시(1963년)부터 회원 자격을 “처” 또는 “유족인 처”로 규정하고 있었음.

11) <2017년 3분기 표준국어대사전 정보 수정 주요 내용(일부 발췌)>

표제항	수정 전	수정 후	비 고
미망인	아직 따라 죽지 못한 사람이란 뜻으로, 남편이 죽고 홀로 남은 여자를 이르는 말. 《춘추좌씨전》의 <장공편(莊公篇)>에 나오는 말이다.	남편을 여윈 여자. 《춘추좌씨전》의 <장공편(莊公篇)>에 나오는 말이다. ※아직 따라 죽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다른 사람이 당사자를 미망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례가 된다.	뜻풀이 수정